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1-학인-00020 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학교 ○학년 ○○○ 모)
피 해 자 ○○○(○○○○학교 ○학년 ○반)
피 신 청 인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휴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 인권교육을 권고한다.

나. 반성문(또는 변형된 형태의 성찰글) 작성 강요는 헌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교육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교육방법으로 채택하지 말도록 교원 교육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낮은 인권감수성에
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
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교에서 교사가 학급을 운영할 때, 상과 별로 학생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방식의 상벌점제와 학생이 쓴 성찰글을 다른 학생이 검사하고
지도(교육)하는 등의 부적절한 교육방법은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
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21. 12. 08.(수)

나. 신청인 ○○○(○○○○학교 ○학년 ○○○ 모)

다. 피해자 ○○○(○○○○학교 ○학년 ○반)

라. 피 신청인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마. 신청요지 : 2021. 11. 29.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고무줄을 손으로 잡고 있게 한 후 당겼다 놓아 학생의 손등에 멍자국이 생기는 상처를 입히고, 학생에게 성찰글(반성문)을 쓰게 한 후 다 쓰지 못하면 이동수업을 보내지 않거나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에 쓰게 하고, 성찰글을 쓰는 동안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였다.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피해자)의 주장

1) 2021. 11. 29. 고무줄총 장난을 한 피해학생에게 피신청인이 “○○○ 나와”라고 하고 손으로 고무줄을 잡고 있게 한 후, 고무줄을 당겨 학생의 손등을 맞추었다. 하교한 피해학생의 손등에 멍자국이 있었다.

2) 피해학생에게 반성문(성찰글)을 쓰게 하였고, 4가지 사유(이유, 상황, 친구의 마음, 앞으로의 다짐)가 들어가지 않으면 반 친구들과 앞에서 반성문을 공개하여 무엇이 빠졌는지 물어보았다. ○○○, ○○○ 등 반 친구들에게 맞춤법이나 문장부호 등을 먼저 검사받고 제출토록 하였다. 글씨 크기

가 일정하지 않고, 문장부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성이 들어있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다시 작성하게 하였다.

3)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동수업을 보내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반성문을 쓰도록 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다.(11. 25. ○○시간, 11. 30. ○○시간, 12. 1. ○○시간, 12. 10. ○○○○○○○○)

4) 성찰글을 쓸 때는 모둠활동에서 제외하여 뒤쪽에 따로 앉게 하고, 반 친구들에게도 아는 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왕따를 주도하였다. 거리두기라고 하였으며, 선생님이 있어도 말도 걸 수가 없다고 하였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모둠에서 제외하여 수업 중에 모둠에게 주는 칭찬열매 등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발표나 멋져 박수에서도 제외하고, 오로지 듣는 수업만 하도록 하였다.

5) 2021. 7. 경 수업 중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고, 정읍교육지원청 장학사, 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이 만나 이후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나 개선되는 점이 없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2021. 11. 29. ○○ 전담수업 시간에 피해학생이 친구에게 고무줄총을 날렸고, 이에 화가 난 친구가 잡으러 뛰어가자 피해 도망 다녀서 ○○교사가 두 학생을 복도로 불러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받지 못했이라며 교실에 와서 하소연하였다.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친구가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라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고무줄을 가지고 교사 책상 쪽으로 오라고 한 후에 “자, 고무줄 한 쪽 잡아봐.”

라고 말하고, 다른 한 쪽을 잡은 후 약 10cm의 거리에서 서로 양 끝을 잡은 뒤 튕겨보기를 하였는데, 학생이 고무줄을 놓쳐서 제 손가락에 튕겼고, “놓지 말고 잘 잡아봐.”라고 말했다. 두 번은 제 손가락에 한 번은 학생의 손가락에 맞았고, “아까 ○○이도 자기를 향해 고무줄이 날아올까 봐 놀라서 너를 잡겠다고 뛰어갔을 거야. 불편했을 친구의 입장도 한 번 생각해 봤음 좋겠어.”라고 말하며 자리로 들어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위협적 행동이나 폭력적인 언행은 없었고, 다만 훈계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2) 피해학생이 고무줄을 맞는 순간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저도 어떤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다. 노란 고무줄이 짧았고, 이 고무줄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을 거라 인지하지 못했다. ○○수업과 이어진 ○○활동과 교실놀이에도 무리 없이 참여하여, 어떤 상처가 생겼을 거라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신청인이 찍은 손등 사진을 조사 과정에서 보았을 때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상처 부위가 고무줄을 잡으며 접혀졌던 손가락 부분이 아닌 손등이었음을 확인하고, 제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진위 여부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상처가 나면 놀라서 울거나 교사에게 다쳤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는데, 고무줄총 튕기기 이후 피해학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상처나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상처 사진은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한 번의 고무줄 튕김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에 생긴 상처인지 평소 스스로 고무줄총 튕기기를 한 결과이거나 자해로 발생한 상처인지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

3) 성찰글 쓰기는 친구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용기 내서 사과하고, 또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그 과정 중의 하나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있다.

4) 피해학생은 1주일 사이에 친구들과의 욕설로 인한 갈등, ○○시간의 고무줄총 사건, ○○시간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친구를 괴롭혀서 폭행 직전 상황까지 간 일 등 계속되는 문제 행동으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지도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5) 친구의 사과는 받았으나 아직 친구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피해학생이 그 친구와 얼른 화해하고 같이 놀고 싶어해서,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상담의 취지를 알렸고, 피해학생도 성찰글 쓰기를 먼저 하고 ○○수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수락하였다. 12월 1일(수) ○○○ 강사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에, 강사한테 지난 시간에 배운 ○○○ 놀이를 복습해 줄 것을 부탁하고, 30분 가량 피해학생에게 상담과 성찰글 쓰기를 지도하였다. 즉, 성찰글 쓰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 행위는 없었으며, 본인의 동의하에 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교육적 취지로 작성되었다. 실제로 성찰글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에게는 상대에게 진심을 전하는 말하기, 회복적 생활교육 등 다른 방식으로 지도하기도 하였다.

6) 피해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될 것을 염려하여, ○○○ 강사에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새로운 학습 단원인 ‘○○○○○’는 상담을 마친 후 수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습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

는 지도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거나, 실질적 수업 배제 행위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실제로 학습 지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당일의 지도행위는 당사자의 동의 과정이 있었고, 지속적인 갈등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수업 배제가 아니라 교사의 감독 하에 별도의 지도행위가 있었으며,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의 복습 활동을 시행하였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2021년 11월 29일경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을 교사 책상 쪽으로 불러서 노란 고무줄 한 쪽은 학생에게 잡게 하고 다른 한 쪽은 피신청인이 잡고 있다가 놓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고무줄을 놓아 피신청인이 두 번 맞았고, 피신청인이 잡고 있는 고무줄을 놓아 피해학생이 한 번 맞았다.

2) 같은 해, 11월에 피해학생이 3번(11. 25., 11. 29., 11. 30.) 성찰글을 작성토록 하였다. 11. 25.은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이 서로 욕을 했다는 이유, 11. 29.은 ○○시간에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고무줄총을 당겼다는 이유, 11. 30.은 ○○시간에 피해학생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다른 학생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혔다는 이유로 성찰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3) 같은 해, 12월 1일경 ○○시간에 학교 ○○ ○○실에서 30분 동안 성찰글을 작성하였다.

4)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수업시간에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 2명이 모둠에서 제외되어 교실 뒤쪽에 따로 앉아 성찰글을 작성하였고, 쉬는 시간에도 성찰글을 작성하였다.

5) 성찰글을 작성한 후 전체 학생에게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걸 들은 반 친구들에게 성찰글에서 빠진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6) 성찰글을 작성하는 동안에는 모둠 활동으로 받는 혜택(칭찬열매 등)과 놀이가 제한되고, 성찰글을 마무리할 때까지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심의 자유 침해

위 인정사실 2), 3), 4), 5)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학급의 학생들에게 성찰글을 쓰게 하였다. 피신청인은 성찰글이 반성문과 다르며, “○학기에 ○○○○ 단원이 나오는데, 이와 연결해서 성찰글을 작성하도록 지도했고, 교과학습과 연관지어 수행평가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찰글 쓰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행위는 없었으며, 본인의 동의하에 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교육적 취지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피신청인, 피해학생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첫 번째, 성찰글은 어떤 행위를 한 경위, 어떤 행위를 한 이유, 그 당시 상대방의 마음, 앞으로의 다짐 등의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여야 하며, 두 번째,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작성하거나 추가로 작성해야 했다. 세 번째, 성찰글을 작성할 때는 '거리두기'라고 하여 모둠에서 제외하여 교실 뒷쪽에 별도로 앉아서 수업을 받아야 하고, 수업중에 모둠활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혜택에서 제외하였다. 네 번째, 성찰글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놀이를 할 수 없고, 다섯 번째, 성찰글을 작성하느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여섯 번째, 어떤 성찰글은 전체 학생에게 읽어야 했으며, 학생들이 성찰글에서 빠진 내용을 지적하면 다시 작성하였다.

피신청인은 성찰글을 "학생의 동의하에 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교육적 취지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찰글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은 피해학생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의"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명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즉, "동의"란 양심의 자유('내면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자기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자유로운 의사로 성찰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인 규칙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성찰글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성찰글은 반성문이 아니라고 주

장하나, 성찰글의 내용이 학생의 행위가 잘못임을 글로 표명하도록 하였고, 학급의 학생들 앞에서 성찰글을 읽게 하여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표명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성찰글은 반성문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3)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 4), 5), 6)항과 같이 피해학생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성찰글을 작성하는 동안 ‘거리두기’라고 하여 모둠에서 제외하여 교실 뒷쪽에 별도로 앉아서 수업을 받아야 하고, 수업중에 모둠활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혜택에서 제외되었으며, 성찰글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놀이를 할 수 없었다.

피신청인이 성찰글을 작성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한 ‘거리두기’ 규칙은 학생을 학급에서 소외,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급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피해학생과 놀지 말 것’을 지시하고, 모둠에서 제외하여 따로 수업을 받게 하고, 모둠에서 부여하는 혜택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거리두기’ 등의 행위는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교사가 이와 같이 학생을 공개적으로 모둠에서 소외시키고 제외하는 “따돌림”은,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쉽게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끼리 이루어지는 따돌림의 경우보다 그 피해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따돌림“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학급 전체 학생에게 따돌림(학교폭력)에 동참할 것을 피신청인이 강요한 행위로도 볼 수 있어, 피해학생뿐 아니라 학급 학생들 모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1)항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고무줄을 튕겨 피해학생의 손등에 1회 맞은 것은 인정하나, “고무줄을 튕긴 이후 피해학생이 상처나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상처 사진은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한번의 고무줄 튕김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고무줄 튕기기에 따른 상처인지 평소 스스로 고무줄총 튕기기를 한 결과이거나, 자해로 발생한 상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제가 영어시간에 고무줄총을 쏘았는데 친구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달라요. 제가 하는 건 날라가고, 선생님이 한 건 늘리는 거라 안 날라가요.”라고 고무줄 탄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 “피가 조금 났어요. 피나는 것은 아프지 않았는데 부은 거는 아팠어요.”라고 당시 상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또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이 두세 번을 놓쳐서 고무줄이 내 오른쪽 손등을 때렸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잘 잡아보라고 하고 내가 고무줄을 놓았다. (고무줄을 잡아 늘인 것은) 약 15cm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이 자해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손등 부위 멍은 피신청인이 고무줄을

놓아서 생긴 멍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생활교육은 교육의 방법 또한 교육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저는 그 학생에게 내가 한 잘못이 다른 학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라고 진술하였듯이,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한 폭력을 피해학생에게 동일하게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 목적에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학생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고 겁나 가지고 놓아버렸는데, 다시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냥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선생님이 늘려서, 늘려 가지고 겁나서 제가 먼저 놓았어요.”라고 진술하였듯이,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한 행위를 피신청인과 재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손등에 상처(멍자국))을 안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4) 학습권 및 휴식권 침해

위 인정사실 3), 4)항과 같이 피해학생은 성찰글을 쓰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늦게 참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해학생이 “2021. 11. 25. ○○시간에 교실에서 성찰글을 작성하였고, 2021. 11. 30. ○○시간에 성찰글을 이유로 수업에 늦었고, 2021. 12. 01. 체육시간에 강당 안에 있는 사무실 같은 곳에서 성찰글을 썼으며, 2021. 12. 10. ○○○○○○에 지난 수업시간 다 작성하지 못한 성찰글을 작성한 후 갈

수 있었다.(10분 남짓 관람 후 감상문 숙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이 “○○시간에는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성찰 글을 쓴 적은 있으나 ○○시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학생은 “저 말고도 2명 더 쓰라고 했어요. 다 쓰면 선생님한테 내고 ○○수업을 다시 하는 거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앞의 수업 내용을) 못 쓴 거 처음부터 친구 거 보고 써야 해요.”라며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친구 공책을 베껴 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학생 외에 2명의 학생이 성찰글을 썼고, 친구의 공책을 베껴 썼다는 진술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간에 피해학생이 성찰글을 쓴 적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신청인은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도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거나, 실질적 수업 배제 행위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실제로 학습 지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당일의 지도행위는 당사자의 동의 과정이 있었고, 지속적인 갈등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수업 배제가 아니라 교사의 감독 하에 별도의 지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는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발간한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위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3.1. 개정판)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시 유의사항’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가급적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앞서 2) 양심의 자유 침해, 3)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찰글 작성 과정은 학생의 동의와 무관하게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에 불과하며, 성찰글을 쓰는 동안 피해학생에게 “따돌림” 등의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안긴 점, 피해학생이 성찰글을 작성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시간과 ○○시간에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휴식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문화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이나 참여에 대한 에너지와 동기 부여가 부족하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능력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는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피해학생은 성찰글을 “아침시간에도 쓰고, 쉬는 시간에도 쓰고, 밥을 먹고 나서 12시 55분까지 쓰고”, 반성문 남은 것은 다음날로 미룬다고 했

으며, 성찰글을 다 쓰지 못하면 피신청인이 보드게임이나 놀이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쉬는 시간에 쓰고, 아침시간에는 놀고 싶다고 생각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신청인 또한, “쉬는 시간에 가지고 놀 수 있는 보드게임 등을 하지 못한다. 성찰글이 우선이기 때문에 놀이가 제한된다.”며 휴식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5) 그밖에 부적절한 교육방법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신청인은 성찰글을 작성하는 학생에게는 모두에서 소외, 배제하는 벌을 받게 하였고, 성찰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에게는 ‘칭찬열매’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학급을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과 벌로 학생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방식은 상벌점제 운영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학급을 운영하면서 피해학생이 작성한 성찰글을 교사가 아닌 다른 두 명의 학생이 검사(맞춤법과 문장부호 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성찰글을 작성하는 학생과 성찰글을 검사하는 학생으로 학생을 차별, 구별짓기한 행위이며, 학생지도(교육)권을 아무 근거 없이 학생에게 위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성찰글 작성이 학습권을 제한할 정도로 지도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라면 더더욱 학생이 학생의 성찰글을 검사하는 교육방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이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7.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